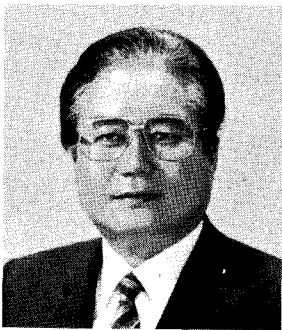


서비스標制度의 實務와改善方向



金寬衡
〈本會 研修部長〉

1. 韓國 서비스標制度

(1) 概要

① 意義

서비스標라함은 서비스業을 하는 者가 自己의 서비스業을 다른者의 서비스業과 識別시키기 위하여 使用하는 標章으로서 特別顯著한 것을 말한다(商標法 第2條 2項)

② 서비스業

서비스業은 生産과 消費에 必要한 사람의 품을 提供하는 用役을 內容으로하는 業을 말한다.(營業에 關한 物資의 形態를 취하지 않음)

③ 서비스業의 識別

서비스業의 識別은 廣告, 去來書類, 看板이나 標札에 使用하는 自他 서비스業을 識別시키는 標章이다.

④ 構成

서비스標의 構成은 記號, 文字, 圖形, 이들의 結合으로 이루어진다.

⑤ 特別顯著性

서비스標의 構成이 明瞭하고 世上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는 識別力이 있는 標章을 말한다.

(2) 審査·登錄等

登錄要件, 不登錄事由, 出願, 審査, 登錄手續, 聯合서비스標制度, 使用權設定, 存續期間, 서비스權의 侵害等은 商標制度의 경우와 같다.

(3) 서비스業 區分

서비스業은 12個業으로 區分하고 있다.

第101類廣告業, 102類金融業, 103類保險業, 104類土木·105類手旋業·106類通信業·107類放送業·建築業, 108類運送業, 109類倉庫業, 110類特殊加工業(他人의 物品을 受託에 의해서 加工하는 業), 111類演藝業, 112類 第101類~111類에 屬하지 아니한業”

(4) 서비스標의 機能과 基本主義

① 機能

- 가. 自他서비스業의 識別機能
- 나. 서비스業의 出處表示機能
- 다. 서비스業의 信用保證機能
- 라. 廣告宣傳機能
- 마. 財産的 機能

② 基本主義

- 가. 登錄主義
- 나. 先願主義
- 다. 權利主義
- 라. 審査主義
- 마. 出願公告主義
- 바. 서비스標 出願主義
- 사. 서비스標 登錄主義
- 아. 職權主義

(5) 서비스標의 特徵

① 使用

商品에 使用하는 商標와 달리 用役(품)을 表示하는 標章이 區分되어 있으며 廣告, 定價表, 去來書類, 看板 또는 標札에 使用한다. 그리고 商品에 서비스標를 表示하여 使用하는 경우도 있다.

② 權利

서비스業을 登錄받은 서비

스權者가 獨占排他權을 가진다.

③ 効力の 制限

- 가. 自己의 姓名, 名稱, 商號等
- 나. 性質表示(品質, 効能, 原材料表示卷)의 서비스標等
- 다. 慣用서비스標等

2. 主要 外國의 例

(1) 日本

서비스標 登錄制度가 없으며 商標登錄制度만 있음.

(2) 美國

서비스마크 登錄制度가 있으며 先使用 登錄主義로서 審査主義이다.

(3) 프랑스

서비스마크 登錄制度가 있으며 先登錄主義로서 無審査主義이다.

“서비스標登錄制度가 있는 國家”

한국, 대만, 필리핀, 이란, 호주, 이집트, 이태리, 오스트리아, 영국, 스웨덴, 소련, 서독, 프랑스, 미국, 멕시코, 브라질 등 82개국이다.

3. 問題點과 改善方向

(1) 問題點

① 서비스標權의 効력이 미치지 않는 範圍 不確實

○ 서비스標의 要部가 서비스業의 効能用途等の 性質表示로 構成되었더라도 登錄이 되면(第8條 2項) 効력이 미쳐야만 獨占權行使를 할 수

있는데, 効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商標登錄主義에 違背된다.

○ 이미 先使用하고 있는 서비스標는 不正競爭의 目的으로 使用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効력이 미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効력이 미치지 않는 範圍가 모호하며 先出願主義에 어긋난다.

② 聯合서비스標의 1서비스標 1出願制度 矛盾

서비스標權者 本人의 類似 서비스標를 各各 하나씩 別途로 出願登錄하게 됨에 따라 出願登錄手續과 管理에 번거로움이 發生한다.

③ 서비스標 一部無効및 取消審判制度 缺如

서비스標 構成의 一部나 그 指定營業中 一部の 無効 또는 取消事由로 因하여 全體 登錄서비스標 및 指定營業에 대한 無効와 取消가 될 경우 처유 및 구제의 길이 없다.

④ 서비스標 登錄과 法院登記의 二元化

한개의 서비스標에 대하여 法的 登錄이 二元化 되고 있다.

⑤ 서비스業 區分의 未洽
서비스業 區分이 大分類로만 되어있어 出願과 侵害等 管理의 어려움이 있다.

(2) 改善方向

① 서비스標의 効力範圍 限定

○ 서비스標가 性質表示라도 需要者에게 顯著하게 認識되어 登錄이 되었으면 効력이

發生하여야 한다고 보며, 그 効力發生과 制限의 範圍를 明確히 해야 한다.

○ 先使用한 서비스標에 대하여 後登錄한 서비스標의 効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制度는 需要者들에게 顯著하게 認識된 先使用 서비스標(先使用한 有名서비스標)만 効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거나 先出願主義에 의거 이 制度를 廢止하여야 한다.

② 聯合서비스標 包括出願 登錄制度 採擇

自己의 先登錄서비스權과 類似한 서비스權 또는 이미 出願中이거나 同時에 類似한 서비스標를 出願할 경우에는 하나의 出願書에 聯合서비스標를 一括하여 수시 出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登錄도 한그룹으로 登錄하여 管理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③ 서비스標의 一部無効 및 取消審判制度 採擇

서비스標의 無効 또는 取消 審判이 請求되었을때 그 서비스標의 一部나 指定 營業의 一部에 저촉되어 無効 또는 取消事由가 發生한 경우에는 그 部分에 限해서만 無効 또는 取消審判을 하는 制度改善이 必要하다.

④ 서비스標 登錄과 法院登記의 一元化

서비스標로 登錄된 商號에 대하여는 法院에서도 國內에 그 商號 한개만 登記하여

<23P에서 계속>